



STATE OF NEW YORK | EXECUTIVE CHAMBER

ANDREW M. CUOMO | GOVERNOR

즉시 배포용: 2013년 6월 18일

CUOMO 행정부, STANDARD CHARTERED 컨설팅 문제에 대해 DELOITTE 와 개혁 협상을 체결하다

Deloitte, DFS- 규제 기관에서 컨설팅 작업을 1년간 일시중지하기로 합의하고 뉴욕주에 1,000 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다

Deloitte, DFS 앞에 등장하는 모든 독립 컨설팅 회사의 모범이 되고 미국의 개혁 모델 역할을 하다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행정부가 부정-돈세탁 문제에 대한 Standard Chartered 에서의 컨설팅 업무에서 회사의 위법행위, 법률 위반, 자치권 부족과 관련해 Deloitte(Deloitte Financial Advisory Services)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본 합의에 따라 Deloitte 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(DFS)의 통제 하에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업무를 1년간 자발적으로 일시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, 뉴욕주에 1,000 만 달러를 납부하고 컨설팅 업계에서 이해충돌을 다루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개혁 활동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
DFS 는 Deloitte 가 오늘 합의한 개혁방안을 DFS 가 보유 또는 승인할 계획인 모든 독자적인 컨설팅 회사를 관리할 모델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. 또한 이러한 개혁방안은 규제 활동 시 독자적인 컨설턴트를 보유한 다른 정부 기관의 본보기 역할도 잠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“뉴욕주와 Deloitte 의 합의는 전 미국뿐 아니라 뉴욕에서 금융 서비스 컨설팅 산업을 개혁하는 새로운 모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”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. “정부 기관이 금융기관에서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제를 내리면 이들 컨설턴트들은 자율적으로 활동하되 이해충돌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의 주택소유자, 투자자, 경제는 독자적인 컨설턴트가 진정으로 '독자적인' 활동을 할 때에 보호 받습니다.”

금융서비스부장 Benjamin M. Lawsk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, “가끔씩 컨설팅 업계는 '내가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네 등을 긁어주마'라는 문화에 오염되어 있고 놀라울만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돈을 내는 대형 기관에 기대기보다 컨설턴트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컨설팅 업계를 조사하고 개혁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업무는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고 앞으로 며칠, 몇 주, 몇 달 더 지속될 것입니다.”

Korean

Standard Chartered 에서의 Deloitte 업무에 대한 DFS 의 조사

2004 년, Standard Chartered 는 뉴욕주 은행감독국(DFS 전임 기관)과 옥연방준비은행(FRBNY)과의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였습니다. 이들 기관은 Standard Chartered 뉴욕지점의 부정-돈세탁 및 은행비밀법 통제 시 몇 가지 준수 및 위험관리 미비점을 확인하였습니다. 본 합의문은 Standard Chartered 에게 자격을 갖춘 독립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여 은행의 부정-돈세탁 문제를 검토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. Standard Chartered 는 Deloitte 에게 이 문제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.

Standard Chartered 에서의 컨설팅 업무 시 Deloitte 활동에 대한 DFS 의 조사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:

- **회사는 컨설턴트에게 규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치권을 알려주지 않았다.** 주로 Standard Chartered 의 이의제기를 바탕으로 Deloitte 는 뉴욕주 은행감독국에게 보내는 해당 문제에 대한 최종 서면 보고서에서 돈세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한 권고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. 본 권고사항은 거래 발생 시 은행이 미달러 청산 활동에 대한 돈세탁 통제를 피하기 위해 유선 메시지 또는 “cover payments”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**다른 Deloitte 클라이언트의 비밀 정보를 Standard Chartered 에게 공개한 행위로 뉴욕금융법 § 36.10 위반.** Deloitte 고위 직원은 Standard Chartered 직원들에게 다른 Deloitte 클라이언트 은행의 부정-돈세탁 문제에 대한 두 장의 보고서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. 두 보고서에는 기밀 감독 정보가 포함되어었는데, 이는 뉴욕금융법 § 36.10 에 따라 Deloitte FAS 가 제 3 자에게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Deloitte 합의

DFS 조사로 드러난 Deloitte 의 위법 행위, 법률 위반, 자치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eloitte 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:

- DFS 가 규제하는 회사들에서 컨설팅 업무 수행을 자발적으로 1 년간 일시중지한다.
- 뉴욕주에 1,000 만 달러를 납부한다.
- 컨설팅 업계에서 이해충돌을 다루기 위한 일련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행한다. DFS 는 DFS 가 보유 또는 승인할 계획인 독자적인 컨설팅 회사를 관리하는 새로운 모델로 본 기준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. 금융기관이 합의 또는 DFS 의 명령에 따라 독립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이 적용됩니다:

- **잠재적인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과거 업무 공개** 금융기관과 컨설턴트는 과거 3 년 동안 금융기관의 컨설턴트가 수행한 모든 이전 업무를 DFS 에게 공개한다.

- **독립 선언 조항** 컨설턴트와 금융기관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는 업무 활동 시 컨설턴트의 궁극적인 결론과 판단은 금융기관의 판단보다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.
- **부정 매수 조항** 컨설턴트의 최종 보고서에는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 조사결과, 결론, 권고사항에 대한 초안을 사실상 검토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낸 금융기관의 모든 관계자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. 또한 컨설턴트는 금융기관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DFS 에게 알린다.
- **금융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권고사항 내용('부정-은폐 조항).** 컨설턴트와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이 채택하지 않은 권고사항 내역을 보관하고 이를 DFS 에 제공한다.
- **독자적인 커뮤니케이션 라인으로 모니터링하기** DFS 는 독립 컨설턴트와 정기적으로(최소 월마다) 만남을 갖는다. 금융기관은 컨설턴트와 DFS 간의 접촉이 금융기관 바깥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.
- **기밀정보 보호** 컨설턴트는 은행감독 자료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정책 및 절차를 신뢰한다.

본 합의서 위반 관련 조항

Deloitte 가 본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DFS 는 규제 금융기관이 기밀 감독 정보를 Deloitte 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금융법 § 36.10 에 따른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이용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뉴욕금융법 § 36.10 에 따라 DFS 는 해당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액세스가 "정의 및 공익의 종말"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컨설턴트가 기밀 감독 정보에 액세스하는 것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규제 금융기관에서의 모든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는 사실상 기밀 감독 정보의 액세스를 필요로 합니다.

Deloitte 와의 맺은 DFS 합의문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:

<http://www.governor.ny.gov/assets/documents/deloitteagreement.pdf>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 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